「2025년 시그니처스토어 발굴 및 지원사업」 모집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지역 대표점포인 시그니처스토어를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2025년 시그니처스토어 발굴 및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킬러콘텐츠로 특정지역에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매력있는 점포를 발굴·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5. 12.

□ **지원대상** : 부산대표 기업으로 성장가능한 로컬크리에이터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2개사**

ex) 대전의 '성심당', 춘천의 '감자빵' 같이 부산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기업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 [참고 1] 참조

□ **지원규모** : **총 2개소, 개소(상권)당 7,000만원 지원**

※ 시그니처스토어 성장지원금 3,000만원, 상권활성화 지원금(시그니처스토어 주변상권 지원) 4,000만원 등

□ **신청기간** : 2025. 4. 21.(월) ~ 5. 12.(월) 18:00

□ **지원내용**

○ **(시그니처스토어 성장지원)**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지원, 성장 컨설팅 등

○ **(상권활성화)** 로컬행사 개최, 상권인프라 개선, 거버넌스 구축지원 등

○ **(지역상권 홍보)** 시그니처스토어의 브랜드 정체성과 스토리를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로컬상권 투어, 온·오프라인 홍보 등 효과적인 마케팅 시행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로컬크리이터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2개사

○ **(가치창출)** 지역특성을 결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 **(지역기반)** 지역상권의 핵심점포(시그니처스토어)로 성장을 희망하는 지역 특색을 활용한 상품 및 사업을 보유한 기업

○ **(상생협력)**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 및 지역 멘토기업으로의 활동 등 사회적환원에 동의하는 기업

○ **(도약의지)** 향후 글로컬상권 도약을 위한 공모사업에 참여의지가 있는 기업

[참고] 로컬크리에이터 요건

◈ **정의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7대 유형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신청제한

①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③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④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참고2**
⑤ 기타 부산경제진흥원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불법, 사행성, 유흥, 기타 사회질서 위반 분야 업종 제외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컨설팅, 성장지원, 상권활성화 촉진활동 지원, 홍보 지원 등

□ **지원절차**

성장 컨설팅	성장지원금 지급	상권활성화	홍보지원	지원금 정산
시그니처스토어 ↔컨설턴트	경제진흥원→ 시그니처스토어	상권활성화 촉진활동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시그니처스토어 →경제진흥원

□ 컨설팅 지원

○ **(지원목적)** 시그니처스토어의 앵커스토어 역할 고취 및 성장계획 구체화

➲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일부 수정·보완 가능

○ **(지원내용)**

- 지역상권 내 앵커스토어의 역할 도출 및 인식 강화
- 상권활성화를 위한 킬러콘텐츠 및 로컬브랜드 발굴
- 시그니처스토어(상권)의 장기 성장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 성장지원금 사용의 구체화, 타당성 확보를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

□ 시그니처스토어 성장지원

○ **(지원규모) 업체당 3천만원 ▹ 2개사 지원**

○ **(지원방법)** 선정 업체 컨설팅 완료 후 업체↔진흥원 협약, 지원금 지급

※ 성장지원금 지급 절차

① **(성장 컨설팅)** 지원업체 선정 후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성장컨설팅 실시**

② **(계획 구체화)** 성장멘토링 통한 지원금 **사용계획 구체화**

③ **(지원금 지급)** 최종 성장지원금 사용계획서 근거로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④ (**지원금 정산)** 계획 근거 **지원금 사용 후 증빙 제출 등 후 정산**

➲ 계획에 근거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지원금 사용 시 지원금 환수

○ **(성장지원금 활용범위)**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지원 등

구 분		집행가능내역
외주 용역비	개발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	마케팅·홍보 용역비
수수료 및 사용료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인증평가, 시험성적의뢰 및 등록, 인허가 등 각종 수수료
특화·자율		기타 지원 사항에는 없으나,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항목

※ 성장지원금의 활용 용도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상권활성화 촉진활동 지원(시그니처스토어 주변상권 지원)**

○ (지원규모) 업체(상권)당 4천만원 ▹ 2개사(상권) 지원

※ 개별업체 지원 불가, 시그니처스토어가 포함된 전체 상권을 위해서만 사용가능

○ **(지원방법)** 상권활성화활동 계획 제출(시그니처스토어) → 행정절차 진행(진흥원)

○ **(지원내용)** (S/W)로컬행사, 거버넌스 구축 등 (H/W)인프라 정비 등

- **로컬행사 개최**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로컬행사 개최
  ▹ 로컬상권 페스티벌, 지역자원 연계 체험프로그램, 공동마케팅 등
- **거버넌스 구축** : 시그니처스토어 - 지역구성원(상인, 주민 등) 거버넌스 구축 지원
- **상권인프라 정비** : 머물고 싶은 상권 환경 조성으로 상권 유동인구 확대
  ▹ 특화거리 조성, 가드닝, 상권정화 등

□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 **(홍보내용)**

- **상권투어** : 시민 대상 로컬상권 투어 진행 ▹ 스탬프투어, 스냅투어 등
- **언론보도** : 기획보도, 특집방송 등 언론보도
- **온라인·SNS** : 시민 밀착 시그니처스토어 홍보 ▹ 카드뉴스,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등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4. 21.(월) ~ 5. 12.(월) 18:00

□ 신청방법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www.bsbsc.kr)

□ 제출서류

연번	구 비 서 류	비 고
1	사업 신청서	[필수] 홈페이지 온라인 입력
2	지원사업 참여 계획서	[필수] 서식 1호
3	사업 참여 확약서	[필수] 서식 2호
4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국세청 홈텍스 등
5	소상공인확인서 1부	[필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6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025 이후 발급분)	[필수] 국세청 홈텍스 ▶ 국세 납세 증명 정부24 ▶ 지방세 납세 증명
7	최근3년간(22~24) 매출액 확인서류	[필수] 국세청 홈텍스 - 표준재무제표증명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서)
8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 의 사 항

- ○ 사업 신청 시 중복신청이 불가(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 사업신청과 서류제출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한해 인정
- ○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한 발급분만 인정
  ※ 소기업,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은 불인정
- ○ 제출서류 미비 및 누락 건은 서류평가에서 자동 제외
- ○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평가방법

□ (1단계) 서류검토

- ○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2단계) 서류평가

- ○ 서류검토 통과자에 대해 실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5인 이상)이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 소상공인 중,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5배수)

□ (3단계) 발표평가

- ○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단 구성, **대표자 자유형식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내외)

□ (4단계) 평가결과심의

- ○ 평가 절차 및 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확정

6 관련문의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재)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단	☎ 콜센터 : 1833-3665 ✉ ko0398@bepa.kr

『시그니처스토어 발굴 및 지원사업』
제 출 자 료 체 크 리 스 트

항목	제출자료 목록	자체확인 (신청자 직접확인)
필수	1. 신청자 입력정보 [홈페이지 온라인 입력]	◯
	2-1. 지원사업 참여 계획서 ※ [서식1] 사업참여계획서(한글파일)	
	2-2. 사업 참여 확약서 [서식2] (서명확인)	
	3. 사업자등록증 1부 - 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4. 소상공인확인서 1부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 마감일 이후 - 발급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5.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2025.4.10.이후 발급분 - 발급처: 국세청 홈텍스 ▶ 국세 납세 증명 정부24 ▶ 지방세 납세 증명	
	6. 최근3년간(22~24) 매출액 확인서류 - 발급처: 국세청 홈텍스 - 표준재무제표증명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서)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1인 사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의사항 : 제출자료 목록 중 필수에 해당하는 서류 누락 시 미 신청으로 처리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식1 사업참여 계획서

※ *[서식1]사업참여 계획서 10페이지 초과 불가*

Ⅰ. 기업현황

1. 일반현황

업종부문(택1)	□ 제조업	□ 도소매/음식	□ 서비스/기타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요품목	
사업장주소			
개업연월일		상시근로자수	명
매출액 (단위 : 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 기업소개

※ 창업스토리 및 기업현황
※ 기업의 특징 및 정점

3. 주요사업내용

※ 사업의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 내용
※ 시장성 : 고객, 시장(규모, 적합성, 전망 등)
※ 경쟁력 : 경쟁사 대비 우위 요소를 통한 아이템의 독창성 및 참신성

4. 주요성과

※ 매출, 인지도, 글로벌 진출(수출), 사회기여, 지원사업 성과 등
※ 고객수, SNS 운영성과(구독자수, 방문자수, 팔로워수, 조회수) 등
※ 특허 등 지재권 보유현황
※ 경진대회 등 입상 실적

Ⅱ. 사업참여계획(시그니처스토어 성장지원)

1. 사업참여 동기 및 문제인식

※ 주요사업목표
※ 사업참여의 필요성 (대·내외적 환경)
※ 애로사항, 문제점, 기회에 대한 내용

2. 성장전략

※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바 (개선 희망 방향)
※ 사업 운영 중 발견한 애로사항, 문제점, 기회에 대한 해결방안
※ 사업 기간 내 목표 및 달성 방안
※ 성장지원금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달성목표
- 목표 매출액, 홍보마케팅, 산업화(스케일업, 프랜차이즈화 등)
※ 반드시 지원사업을 통해 하고자 하는 내용과, 사업비 사용 계획이 일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계획, 기대효과가 연계되어야 합니다.

3. 당해연도 추진계획

※ 성장지원금 활용을 통한 사업개선, 신규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 반드시 지원사업을 통해 하고자 하는 내용과, 사업비 사용 계획이 일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계획, 기대효과가 연계되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 반드시 지원사업을 통해 하고자 하는 내용과, 사업비 사용 계획이 일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계획, 기대효과가 연계되어야 합니다.
※ 지원사업 참여시 기대 효과
※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성장가능성
※ 기타 자금 조달계획 , 향후 추진 계획 등

5. 사업비 집행계획

비 목		산출근거	소요예산(원)
용역비	*홍보*	*판촉물 제작(홍보책자) 100건 × 5,000원 = 500,000원*	*500,000*
수수료	*특허등록*	*지식재산권(상표출원 비용) 3건 × 100,000원 = 300,000원*	*300,000*
합 계			

※ 성장지원금의 활용 용도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Ⅲ. 사업참여계획(상권활성화 촉진활동 지원)

1. 상권활성화 촉진활동 참여 주요 업체리스트

상호명	대표자명	업종	주요경력, 주아이템 등

※ 시그니처스토어가 포함된 상권 내 업체만 작성, 칸이 부족할 경우 늘려서 작성

2. 상권 구역도

※ 상권활성화 촉진활동 대상 상권 구역도(시그니처스토어가 포함된 상권 구역도)

3. 상권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상권이 보유한 자원 및 특징
※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바 (개선 희망 방향)
※ 사업 기간 내 목표 및 달성 방안
※ 반드시 지원사업을 통해 하고자 하는 내용과, 사업비 사용 계획이 일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계획, 기대효과가 연계되어야 함

4. 당해연도 추진계획

※ 로컬 행사, 상권 인프라 개선, 공동 마케팅 등
※ 반드시 지원사업을 통해 하고자 하는 내용과, 사업비 사용 계획이 일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계획, 기대효과가 연계되어야 합니다.

5. 기대효과

※ 반드시 지원사업을 통해 하고자 하는 내용과, 사업비 사용 계획이 일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계획, 기대효과가 연계되어야 합니다.
※ 지원사업 참여시 기대 효과
※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성장가능성
※ 기타 자금 조달계획 , 향후 추진 계획 등

6. 사업비 집행계획

비 목		산출근거	소요예산(원)
용역비	*행사비*	*행사장 부스설치 20개 × 300,000원 = 6,000,000원*	*6,000,000*
합 계			

Ⅳ. 참가신청 업체 사진

업체 외부 전경 (간판포함)	*업체 외부 전경*
업체 내부 전경 1	*업체 내부 전경 2*
주요품목 1	*주요품목 2*

서식2 **사업 참여 확약서**

2025년 시그니처스토어 발굴 및 지원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2025년 부산 시그니처스토어 발굴 및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의무 및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 ○ 각 평가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등이 확인 될 경우 선정취소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 ○ 성장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 진흥원이 승인한 지원금 활용 계획에 근거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 선정 이후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 사업 종료 후 2년간 성과조사에 적극 응해야 함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 (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참고1 소상공인의 기준

【소상공인 확인기준】
① 연평균매출액 + ②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업 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소기업기준 (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
A. 농업, 임업, 및 어업			80억원 이하	5명 미만
B. 광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11	음료 제조업	120억원 이하	
	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13	섬유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20억원 이하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억원 이하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24	1차 금속 제조업	120억원 이하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억원 이하	
	28	전기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0억원 이하	

업 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소기업기준 (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
C. 제조업	31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피물 제조업 중 철도차량용 의자제조업에 한정	120억원 이하	
		32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제조업에 한정	120억원 이하	
	32	가구 제조업		120억원 이하	
	33	기타 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원 이하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0억원 이하	5명 미만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업		120억원 이하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0억원 이하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0억원 이하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0억원 이하	
F. 건설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G.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5명 미만
H. 운수 및 창고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I.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5명 미만
J.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K. 금융 및 보험업				80억원 이하	
L.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P.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참고2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3.12.)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